

I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 설립과 허가)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한 법인 설립근거

○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 2015. 5. 29. 조례 제4003호 제정
- 2016. 9. 30. 조례 제4322호 개정

II

설립목적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정관 제2조]

본 교류센터는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전라북도가 세계의 여러 도시와 국제 교류를 폭넓게 추진함으로써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도민의 국제이해 증진과 외국인 거주 여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주요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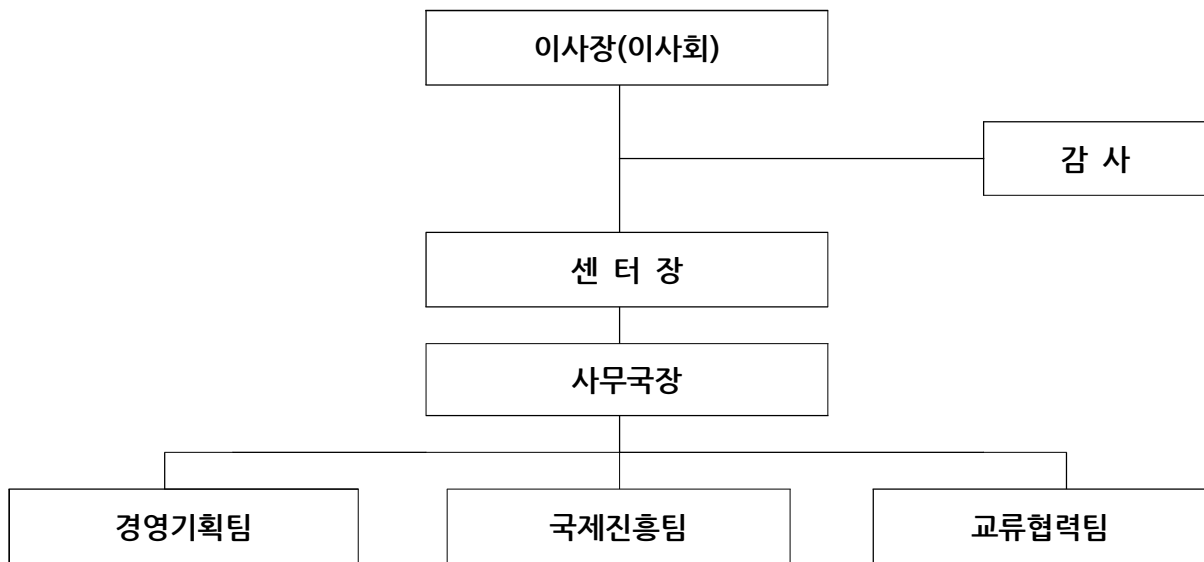
- 2015. 5. 29. (재)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 2015. 8. 6. 국제교류센터 설립허가
- 2015. 11. 3. 국제교류센터 개소식
- 2017. 9. 28. 국제교류센터 조직개편
- 2018. 1. 16. 국제교류센터 이전 개소식
- 2018. 12. 21. 국제교류센터 조직개편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정관 제4조]

1. 환황해 중심도시 전북 건설을 위한 국제 민간교류 지원 사업
2. 도민의 국제이해 증진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의 기획 운영
3. 유학생 유치 관리와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4. 각종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국제교류서포터즈단 운영
5. 해외 전북 브랜드 제고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각종 홍보 사업
6. 자매도시간 문화예술, 스포츠, 청소년 교류 등의 사업 지원
7.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국제협력 기관 등과의 연계사업
8. 국제교류 관련 교육 및 학술 프로그램 운영
9. 국제교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각종 자료의 수집 또는 간행
10. 국제교류증진을 위한 미래 전략 인재육성 사업
11.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공공기관 및 단체등으로부터 각종 수탁 사업의 수행
12. 기타 교류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3. 위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

V

조직도



VI

시설현황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우리(URI)글로벌라운지

VII

정·현원 현황

구 분	합 계	직 급 별(단위 : 명)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대리	주임	사원
정 원	13	1	1	3	2	4	2
현 원	12	1	0	3	2	3	3